

가맹계약서

갑(가맹본부)과 을(가맹점사업자)은 다음과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한다.

당사자

갑(가맹본부)	상호(성명)		사업자번호	
	주소		연락처	
을(가맹점사업자)	상호(성명)		사업자번호/생년월일	
	주소		연락처	

가맹점 개요

가맹점명		영업표지(브랜드)	
영업소재지		영업지역	
계약기간		개점예정일	

가맹금

구분	금액	납부시기	비고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 영업표지와 영업시스템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허락하고, 을이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영업표지의 사용)

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영업표지와 상호, 디자인을 사용하며,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.

제 3 조 (영업지역)

갑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(가맹금)

을은 위 가맹금(가입비, 보증금, 로열티)을 위 표에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갑에게 지급한다.
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을의 미지급 채무를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.

제 5 조 (교육과 지원)

갑은 을과 종업원에게 개점 전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, 계약기간 중 정기적으로 경영·판촉 지원을 제공한다.

제 6 조 (상품 공급)

갑은 을에게 가맹사업에 필요한 상품과 원재료를 공급하며, 공급가격과 거래조건은 별도 공급계약에 따른다.

제 7 조 (가맹점 준수사항)

을은 갑이 정한 운영 매뉴얼과 품질 기준을 준수하며,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
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이용한 다른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 (계약기간과 갱신)

계약기간은 위 계약기간에 따르며, 을이 기간 만료 전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갱신 여부를 정한다.

제 9 조 (계약의 해지)

을이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운영 매뉴얼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10 조 (계약 종료 후의 의무)

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간판 등 표시물을 철거하며,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반환한다.

제 11 조 (분쟁 해결)

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먼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20 년 월 일

갑(가맹본부) : (서명 또는 인)

을(가맹점사업자) : (서명 또는 인)

※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 계약 전 관련 법령과 개별 사안을 확인하십시오.